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이내 기관장·감사 해임권 마련 등〉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4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감사 해임권 마련 등 (안 제28조)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혁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8. 25.

다. 회 부 일 : 2025. 8. 26.

II. 제안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첫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임기 보장을 이유로 기존 기관장이 유임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둘째, 대통령이 임기 만료와 무관하게 모든 기관장을 교체해야 하는 구조는 정책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유능한 인재를 국정철학에 맞게 계속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됨.

셋째,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될 경우 종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현행 제도는, 권한이 없는 자가 계속 운영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 제도적 정합성과 책임성에 문제를 초래함.

이에 본 개정안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정책과 부합하는 인사는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단순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함으로써, 임기 만료자가 권한을 행사하며 기관을 운영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함.

Ⅲ.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관장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여 단순한 현상유지 업무만 수행하게 함.

IV. 검토의견

1.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감사 해임권 마련 등 (안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기 - 기관장: 3년 - 이사, 감사: 2년 - 1년을 단위로 연임 가능 <신 설>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임할 수 있음</u>
○ 직무수행기간 - <u>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함</u>	○ 직무수행기간 - <삭 제>

현행법¹⁾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감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경우 취임 초기인 6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무 수행 근거를 삭제하고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과 새로운 정부 정책방향을 일치시키고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경우 기관장 및 감사의 임기와 관련없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

또한, 현행법³⁾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그 직무나 책임을 위반하거

2)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보장과 경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

나 소홀히 한 경우 해임 근거를 마련(제35조)하고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 평가실적이 저조한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 근거를 마련(제36조 및 제48조)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임의 사유 등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감사를 새로운 대통령 취임 후 6

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비상임이사과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과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월 이내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해임의 시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임 사유나 기준, 판단 근거 등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임을 할 수 있는 주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기관장이나 감사의 해임은 기관장·감사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해임의 근거나 사유,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셋째, 임원의 직무수행기간 삭제와 관련하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 대통령 교체 시기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체 임원에 대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기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직무수행기간을 개정하는 개정안들⁴⁾이 다수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의안번호 제2211141호(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267호(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606호(윤준병의원 대표발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임기) ① · ② (생 략)	제28조(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기관장 및 감사는 대통령의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후단 삭제>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157